#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28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윤준병·조정식·김태년

정성호 • 문진석 • 김윤덕

김한규 · 조계원 · 박홍배

이재정 • 박성준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.9kg에서 2024년 55.8kg으로 10년만에 12.7%나 감소하였고,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.

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,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.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필요가 있음.

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'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하고,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 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.(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·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 자·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
	<u>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</u>
	계 강화에 관한 사항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경영개선 지원) ① (생	제5조(경영개선 지원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중
	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
	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
	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
	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
	등의 품질・제조기술의 향상
	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・보
	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
	<u>있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	③ 제1항 및 제2항에
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	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---.